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18645 |
|----------|-------|

제안연월일 : 2016. 3.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21일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3. 4. 1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3년 9월 16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13. 12. 1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5년 3월 18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5. 6.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5년 3월 26일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5. 4. 1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

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15년 4월 20일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바. 2015년 6월 18일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15년 7월 6일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5. 10.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 2015년 7월 13일 이상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15년 7월 17일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5. 10.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아. 2015년 10월 20일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15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자.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6. 2. 18.)에 서는 위 11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차.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6. 2. 1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1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안 제20조).
-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안 제50조의10).
-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4·제10호의2·제13호의2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비허가)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

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을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4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제14조의5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의3제4항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를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을 “신용카드업자 등 외의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각각 “신용카드업자 등 외의 자”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거래하도록”을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업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28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38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를 “할부금융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제46조의3 및 제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 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을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을 “소유한 대주주 주식의 규모 등”으로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로, “여신을 하는 행위”를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액”을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제50조의8제1항 중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을 ““여신금융상품””으로 한다.

제50조의10부터 제5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50조의9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의11(설명의무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금융상품의 신청인, 신용카드회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이자율 등 상품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신청인등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

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
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제1항제1호 중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권리·의
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
업협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
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로,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
를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

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6조”를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를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2.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제64조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제6장에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69조의2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9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
전문금융회사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0조제3항·제4항”을 “제4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12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별표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5호 중 “제50조”를 “제49조의2 또는 제50조”로 하며, 같은 표에 제4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의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의4. 제46조의3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3의2. 제50조의11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인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 제35호 및 제4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

용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신 설>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
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신 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
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
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
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
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
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
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
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15. ~ 20. (생략)

15. ~ 20. (현행과 같음)

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
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제5조(자본금) ①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1.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② (생략)

<신설>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예비허가)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3. (생략)

4. 이 법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6.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6. (현행과 같음)

③ -----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
--.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④ (생략)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생략)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 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신 설>

③ ~ ⑦ (생 략)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 ⑤ (생 략)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기업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
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
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
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
아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
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
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
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
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
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는-----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

-----신용카드업자와 「은
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업자등 외
의 자는-----
-----.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
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
지행위) ①·② (생략)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
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
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
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용카드업자등 외
의 자-----신
용카드업자등 외의 자-----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
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

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
정)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
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

드가맹점 자문·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용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영세한 중소기업용 신용카드가맹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세한 중소기업용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28조(적용 범위) -----시설대여업자-----
-----.

제38조(적용 범위) -----할부금융업자-----
-----.

제41조(적용 범위)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
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
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
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
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 6. (생략)

<신설>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
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
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
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46조(업무)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
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
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
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
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

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 설>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를 결의하여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 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
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
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
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
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
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식-----

-----.

④ (현행과 같음)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여신전문금융회
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
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
-----소유한 대주주 주
식의 규모 등-----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
위 등) ① -----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 3. (생략)

② (생략)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를 하
는 행위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
여한도-----

④ -----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
용회사-----
-----신용공여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의9(광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9(광고) ① -----

-----“여신금융상품”-----

-----.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50조의9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의11(설명의무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금융상품의 신청인, 신용카드회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이자율 등 상품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신청인등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신 설>

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
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
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
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
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
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
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

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 4.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1. -----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신설>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 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 제54조의4제2항·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4. (생략)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제5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

2. -----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 (현행과 같음)

제58조(과징금) ① -----
-----제46조(제5

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2.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

⑤ ~ ⑦ (생략)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9. (생략)

<신설>

<신설>

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4조(업무) -----
-----.

1. ~ 8. (현행과 같음)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현행 제9호와 같음)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

<신 설>

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
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
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
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
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
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
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
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
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설>

10. (생략)

② ~ ⑧ (생략)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
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① -----

--5천만원-----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아니한 자

4의2. (생략)

4의3. (생략)

5.·5의2. (생략)

6.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
한 자

7.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
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 10의3. (생략)

11.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
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2. ~ 14. (생략)

<신설>

4.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4의2.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5.·5의2. (현행과 같음)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
제2항-----

7. 제4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

8. ~ 10의3. (현행과 같음)

<삭제>

11. ~ 13. (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 | |
|--|--|
|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 <p><u>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u></p> <p>3. <u>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u></p> <p>4. <u>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 ----- ----- -----.</p> |
|--|--|